

[수시공시] 코람코영종자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 신탁계약 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	[제정 2010.6.29], 시행일 2010.6.29 [일부 개정 2011.9.11], 시행일 2011.9.11 [일부 개정 2012.12.28], 시행일 2012.12.28	[제정 2010.6.29], 시행일 2010.6.29 [일부 개정 2011.9.11], 시행일 2011.9.11 [일부 개정 2012.12.28], 시행일 2012.12.28 [일부 개정 2015.6.4], 시행일 2015.6.4	
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 기간)	①~② <생략>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.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①~② <좌동>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8년간으로 한다.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5.6.4>	
제39조 (보수)	①~② <생략> ③ 신탁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종료 되는 경우 초과하는 신탁계약기간에 대한 투자신탁보수는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을 매 회계기간으로 하여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<개정 2012.12.28> 1.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. 투자신탁의 일부해지(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) 2.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2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 ⑤ <생략>	①~② <좌동> ③ 제2항에 따른 보수는 2015.6.4 일부 개정된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(이하 ‘2015.6.4 개정 시행일’) 이전까지만 적용하고, 2015.6.4 개정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며,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2015.6.4 개정 시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. 단 분항에서의 투자신탁보수는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하며,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금액과 별도로 지급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 : 700,000,000원 2. 신탁업자보수 : 300,000,000원 3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130,000,000원 <개정 2015.6.4> ④ <삭제, 2015.6.4> ⑤ <좌동>	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 40 조 (환매수 수료)	<p>① 제26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90일미만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, 2015.6.4>	

시행일: 2015.06.04